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23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 조은희 · 이양수 · 최수진

강선영 · 조배숙 · 김소희

이성권 • 박정하 • 서일준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 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 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가. 연초(煙草)

나.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한다.

다.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등 담배의 원료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담배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u>	1 <u>다음 각 목의 어</u>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u>느 하나를</u>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u>
	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
	<u>외한다.</u>
<u><신 설></u>	<u>가. 연초(煙草)</u>
<u><신 설></u>	나.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
	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
	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
	<u>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u>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를 거친 결과 유해성이 없
	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
	의한다.
<u> <신 설></u>	다.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 대

2. (생략)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u> 담배 는 몰수한다.

② (생 략)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연초, 니코틴 등
<u>담배의 원료와</u>
② (현행과 같음)